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8월 10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규칙 제641호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기초” 를 “임기 초”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선거후” 를 “총선거 후” 로, “지역선거구 순서” 를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전단 중 “임기초” 를 “임기 초” 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외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5항 중 “2일이상” 을 “2일 이상”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전 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장선거일”을 “의장 선거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이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의회시부터”를 “개의회 부터”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의사일정에올린”을 “의사일정에 올린”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본문 중 “발의하는때” 를 “발의하는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하나” 를 “어느 하나” 로 한다.
- 제20조제1항 본문 중 “배부하고” 를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로, “그심사” 를 “그 심사” 로 한다.
- 제22조제2항 중 “기간내” 를 “기간 내” 로 한다.
- 제28조제2항 중 “취지설명” 을 “취지 설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건이상” 을 “2건 이상” 으로 한다.
-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회부” 를 “재 회부” 로 한다.
- 제32조제2항 중 “끝난다음” 을 “끝난 다음” 으로 한다.
- 제32조의2제1항 중 “관심사안” 을 “관심 사안” 으로 한다.
- 제34조 중 “못한때” 를 “못한 때” 로 한다.
- 제35조제1항 중 “의제외” 를 “의제 외” 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 제38조 중 “소수의견자” 를 “소수 의견자” 로 한다.
- 제40조제1항 중 “끝날때” 를 “끝날 때” 로 한다.
- 제41조제2항 본문 중 “2인이상” 을 “2명 이상” 으로 한다.
- 제46조제2항 중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검표위원” 을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 으로 한다.
- 제50조제1항 본문 중 “2인이상” 을 “2인 이상” 으로 한다.
-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 본문까지 중 “아니된다” 를 각각 “아니 된다” 로 한다.
-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회의중” 을 “본회의 중” 으로 한다.
- 제55조 중 “1인이상” 을 “1명이상” 으로 한다.
- 제57조제3항 중 “있다” 를 “있다” 로 한다.
- 제62조제2항 중 “열때” 를 “열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 제63조제1항 중 “서면으” 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되기전” 을 “되기 전” 으로 한다.
- 제65조제2항 후단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 제71조제2항 중 “종합심사케” 를 “종합 심사하게” 로 한다.
- 제72조의2제3항 본문 중 “시정질문시간” 을 “시정질문 시간” 으로 한다.
- 제73조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 를 “10일 이내” 로 한다.
- 제75조제2항 단서 중 “폐회중” 을 “폐회 중” 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기일내” 를 “기일 내” 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장안” 을 “회의장 안”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제81조 중 “회의장안” 을 “회의장 안” 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6조제8호 중 “소란등” 을 “소란 등” 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녹음등” 을 “녹음 등” 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 을 “소속위원 중” 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중 “동조” 를 각각 “제88조” 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5일이내” 를 “5일 이내”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중” 을 “기간 중” 으로, “3일이내” 를 “3일 이내”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u>임기초</u>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 <u>임기 초</u>----- -----.</p>
<p>제3조(의석 배정) ① (생략) ②기초의회 <u>총선거후</u>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u>지역선거구 순서</u>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3조(의석 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총선거 후</u> ----- ----- <u>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u>-----.</p>
<p>제4조(개회식) &lt;신 설&gt;  <u>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u></p>	<p>제4조(개회식) ①<u>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u> ②<u>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u></p>
<p>제5조(선서) 의원은 <u>임기초</u>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p>	<p>제5조(선서) ---- <u>임기 초</u>----- -----. -----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u>다만 의원</u></p>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2일 이상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 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

<신 설>

④ (생 략)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 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생 략)

<신 설>

제12조(회기) ① (생 략)

선자로 한다.

④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  
-----  
-----.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이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 한다.

제12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②----- 집회 후 -----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회기 중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개회시 부터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사일정에 올린 -----  
-----  
-----.

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범위) ① (생략)

②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심사기간) ①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의하는 때-----  
-----  
-----  
-----  
-----  
-----  
-----.

③-----  
-----  
----- 어느 하나-----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  
----- 그 심사-----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8조(안건 심의) ① (생략)

②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생략)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2조의2(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

②-----  
-----기간 내-----  
-----  
-----  
-----.

제28조(안건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지 설명-----  
-----  
-----.

③-----  
-----2건 이상-----  
-----.

제29조(재회부) -----

-----  
-----  
-----  
----- 재 회 부 -----  
-----  
-----.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끝 난 다 -----  
-----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유발언) ①-----

-----

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전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 관심 사안-----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발언의 계속) -----  
-----  
-----  
----- 못한 때-----  
-----  
-----  
-----.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의제 외-----  
----- 아니-----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충보고) -----  
----- 소수 의견자-----  
-----  
-----  
-----  
-----.

제40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  
-----  
-----  
----- 끝날 때-----  
-----.

② (생 략)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②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46조(투표절차) ① (생 략)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생 략)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생 략)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 략)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2명 이상-----  
-----  
-----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검표위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2  
인 이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② (생략)

③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 아니 된다.

③-----  
-----  
-----아니 된다.

④-----  
----- 아니 된다. -----  
-----  
-----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  
-----  
-----  
----- 본회의 중 -----  
-----.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 1명 이상-----.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2조(공청회) ① (생략)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  
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  
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  
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  
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위원회에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  
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

-----  
---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열 때-----  
-----  
-----.

③-----  
-----  
-----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되기 전-----  
-----.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생략)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생략)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② (생략)

③의원의 시정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략)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5조(사직) ① (생략)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

---. -----  
-----  
----- 아니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종합 심사하게-----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정질문 시간-----  
-----.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10  
일 이내-----  
-. -----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사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등) ① (생략)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제8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5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정신에 이상인 있는 자

----. ---- 폐회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기일 내-----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  
----- 회의장 안-----  
-----아니  
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8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  
-----  
-----.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  
려가 있는 자

②·③ (생략)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  
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  
다.

1. ~ 7. (생략)

8. 기타 소란등 회의와 진행을 방  
해하는 행위

제87조(녹음, 녹화등) ① (생략)

②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  
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  
략)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③ ~ ⑤ (생략)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  
한) ①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1. ~ 7. (현행과 같음)

8. --- 소란 등 -----  
-----

제87조(녹음, 녹화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녹음 등-----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소속위원 중-----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  
한) ①-----

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  
 ----- 제8  
 8조 -----  
 -----  
 ----- 제88조 -  
 -----  
 -----  
 ② -----  
 ----- 제88  
 조 -----  
 -----  
 ----- 5  
 일 이내 -----  
 -----  
 ----- 기간 중 -----  
 ----- 3  
 일 이내 -----

군산시 고시 제2017-10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8호 (2017. 08. 09.)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군산시 군산창길 21(금동)
  - 성명 : 군산해양경찰서
- ③ 허가목적 : 연안구조장비 계류시설 설치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58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445.5㎡
- ⑥ 허가기간 : 2017. 08. 09. ~ 2022.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17 - 10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6호 (2017. 08. 09.)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 성명 : 군산시 건설과
- ③ 허가목적 :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13-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02㎡
- ⑥ 허가기간 : 2017. 08. 09. ~ 2022. 08. 01.까지